

대구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214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2140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8가합20508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변론 종결2022. 9. 14.

판결 선고2022. 9. 28.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8가합20508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7,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홍은아

판사박지원